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

의 안	473
변 호	

제출년월일 : 1999. 4.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체입법 조항중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를 강화한 조항에 대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건축폐기물을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 구분(안제 2조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6)에 세부규정으로 불필요
2. 토지.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의무 삭제(안 제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청결유지 의무 규정
3.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의무 삭제(안 제8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서 주민 자율적 실천 계도사항임
4. 폐기물처리업허가 제한규정 삭제(안 제12조 제1· 2· 3항).
법령의 정수제한 규정의 폐지로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임.

5.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삭제(안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39. 40. 41. 42조 및 환경부훈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6. 폐기물처리실적 제출의무 규정 삭제(안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 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 8조 · 제12조 · 제13조 및 제16조를 삭제하고 제9조내지 제11조를 제8조내지 제10조로,
제14조 · 제15조를 제11조 · 제12조로, 제17조 · 제18조를 제13조 ·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 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 4 조(청결 유지등)① 생 략 ②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의 대청소 실시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이상 당해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4-5중)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 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에 세부규정 (삭 제) *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명시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삭 제) * 보관용기 설치의무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분리수거를 위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설치 사용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12 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파주시의 관할구역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13 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을 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삭 제)	*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허가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허가규제조항 및 허가기간등은 법령에 근거가 없음
			(삭 제)	* 법제39~42조 및 환경부훈령에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적 규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16 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제 16 조(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제4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제 43 조	제 43 조
제 9 조 내지 제 11 조	제 9 조 내지 제 11 조	제 8 조 내지 제 10 조	제 8 조 내지 제 10 조	제 8 조 내지 제 11 조와 같은
제 14 조	제 14 조	제 11 조	제 11 조	제 11 조
제 15 조	제 15 조	제 12 조	제 12 조	제 12 조
제 17 조	제 17 조	제 13 조	제 13 조	제 13 조
제 18 조	제 18 조	제 14 조	제 14 조	제 14 조